

장학금지급규정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04. 1. 2
개 정	:	2004. 11. 1
개 정	:	2005. 7. 20
개 정	:	2007. 9. 1
개 정	:	2008. 9. 1
개 정	:	2009. 1. 20
개 정	:	2009. 9. 1
개 정	:	2010. 3. 1
개 정	:	2010. 6. 1
개 정	:	2011. 7.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2. 6. 1
개 정	:	2013.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1조에 의거하여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구성) ①장학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그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전항의 교직원은 총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학생 해외 장학연수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지급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장학금의 종류 · 신청자격 · 지급금액

제7조(장학금의 종류 · 자격 · 지급금액) ①장학금의 종류, 자격 및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정된 지급금액이라도 외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에는 외부장학금을 우선하여 확정된 지급금액에서 외부장학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②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편입학 첫 학기(1학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50%를 내고, 2학기부터는 성적에 따라 현행 소속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의 종류 · 자격 · 지급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자격을 제한한 자
3.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
 - 가. 1학기 내지 6학기 : 15학점 미만, 다만, 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자의 신청학점 제한자는 12학점 미만
 - 나. 7학기 : 9학점 미만
4. 재입학 및 편입학 한 후 한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장학생 선발

제9조(장학금의 신청) ①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이후 학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증명서 1부
2. 국가고시장학금 : 국가고시 합격증 사본 1부
3. 기타 교학지원처에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 : 해당 구비서류 1부

제10조(지급계획서의 심의와 승인) (삭제)

제11조(장학생의 확정) 교학지원처장은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 이중추천 여부, 지급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장학생 공고) 교학지원처장은 장학생명단을 작성하여 기획관리처(경영지원팀)에 송부하고 명단을 공고한다.

제13조(장학증서 발급)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장학증서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5장 장학금 지급

제14조(지급방법) ①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각종 장학금에 이중으로 선발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 중 지원금액이 많은 장학금만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현금지급 금지) 장학금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구입비 및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등록금의 환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1.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2.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제17조(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칙 제22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

사 유 발 생 일	유효 금액
학기 개시일 전	장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장학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 경과전	장학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전	장학금의 1/3 해당액

②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자중 입대, 중병(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

③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지급결과 보고) 교학지원처장은 장학금지급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숙사비 관련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장학금의 성적 기준 적용은 201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원각불교장학금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 자격 · 지급금액

		내 용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신입생장학금	원각불교 장학금		신입생전원(2학기). 단, 1학년 1학기 학사경고(예비)자인 경우 1학년 2학기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전교수석 장학금		전교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 학업장려금 120만원 지원	2011학번 이전
			전교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50만원)	2012학번 이후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A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로 입학한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 학업장려금 90만원 지원	2011학번 이전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00만원)	2012학번 이후
		B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모두 2등급 또는 수능 반영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 제외)	
금강인재장학금	학업최우수 장학금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대상자에서 제외. 단, 해당학기 전원이 교환학생인 경우 예외로 함) (삭제)	해당 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구분없음
	천대금강 장학금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금 기준에 충족한 자. 단,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0 이상.	장학생 기준(별표2)에 충족한 자로서 -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70이상 : 등록금액의 70% 면제	2011학번 이전
			장학생 기준(별표2)에 충족한 자로서 -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70이상 : 등록금액의 50% 면제	2012학번 이후	
	국가고시 장학금	A	재학 중 국가고시(5급 공채,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사유발생 다음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B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 교수 추천자 단,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하계/동계 방학 전 선 발된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공로장학금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총학:2명 이내 부속기관 및 학생 자치 기구:2명
	봉사장학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학술활동 장학금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외연수 장학금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금 지원계획」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금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 결정	
	외국인학생 장학금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2.7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포함)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20만원)	
	근로장학금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70 이상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교육보호 장학금		신입생으로 북한 이탈주민인자(본인, 자녀)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액의 70%면제(입학금제외)	
	복지 장학금	A	신입생으로 장애등급 1~2등급인 자.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제외)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12학번 이후
B		신입생으로 장애등급 3~4등급인 자.	2년간(4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제외)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기여장학금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금강우수졸업진학 장학금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유학국별 외국어 시험 성적 취득자로서 세계유명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우수졸업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000\$, 일어권 10,000\$, 중어권 7,000\$ 지급	연간 10명 이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000만원 지급	연간 2명 이내
외부장학금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입학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20 이상(본인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면제	

*해당 장학금(전교수석, 수능성적우수 A, B)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 - 추가

(별표 2)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세부내용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 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특강등 학교행사 참여	특강 참여율이 70%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교학지원처 학생복지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공인 영어시험 응시여부	졸업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에 학기당 1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공인영어시험 수험표 또는 접수증 사본을 학생복지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